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과제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 초록

-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 이에 이 연구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가족변화 및 부양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외국의 부양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모색하였음.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도는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정비된 바 없이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이 연구는 가족변화 및 부양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부양 이슈를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는 부양제도 중 민법상 부양제도(이른바 사적 부양제도)에서 경제적 부양을 중심으로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함.

### 통계를 통해 본 가족변화와 부양의식

- 인구와 가구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와 가족 및 부양에 대한 선행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구조의 다양성 확대'와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의 측면에서 가족변화를 살펴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는 개인의 증가 추이와 가족 유동성 증대를 통해 확인됨.
  - 가장 눈에 띄는 구조 변화는 비혼, 1인가구 등 가족을 선택하지 않는 개인들의 증가 추세임. 혼인율 하락(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80-2020, 각년도))과 비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대되는 결과(통계청,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사회조사(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를 볼 때 향후 '혼인'은 더 이상 보편적 규범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파트너십(혼인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또한 부부, 부모-자녀 등 친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비친족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음(아래 <표 1> 참조).

<표 1>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20-2050)

(단위: %)

구분	2020	2025	2030	2040	20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31.2	34.3	35.6	37.9	39.6	
친족가구	계	66.8	63.3	61.8	59.2	57.3
	부부	16.8	18.3	20.0	22.2	23.3
	부부+자녀	29.3	26.0	23.6	19.7	17.1
	부+자녀	2.5	2.3	2.2	2.1	2.0
	모+자녀	7.3	7.0	6.9	6.6	6.6
	3세대이상	3.8	2.9	2.4	1.8	1.4
	기타*	7.1	6.8	6.7	6.7	6.8
비친족가구	2.0	2.4	2.6	2.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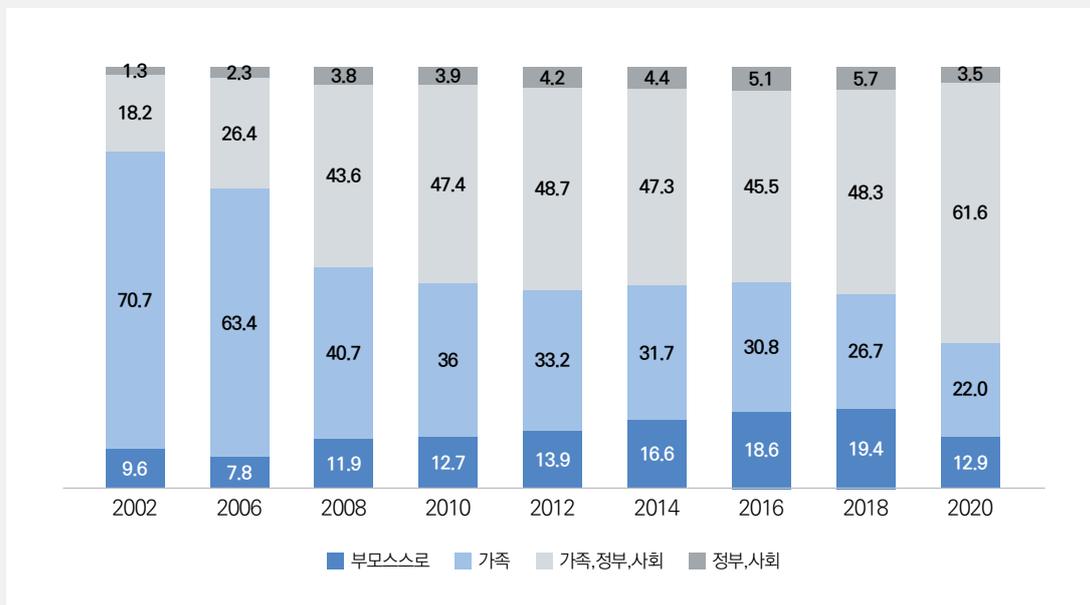
\*주: 기타는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2022.6.28),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 보도자료, p.4.

- 전통적인 가족 규범의 약화는 가족의 유동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통계분석 결과 결혼의 안정성은 약화되고, 이혼, 재혼, 비혼 동거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화 또는 제도혼 이외의 관계 선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통계청, 인구동향조사(1980-2020, 각년도); 통계청, 이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통계청,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사회조사(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이는 가족이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며, 전 생애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관계와 삶의 방식이 유동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가족관계의 유동성은 기존의 고정된 가족형태를 상정한 현행 부양제도와는 정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 가족의 개념과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에서도 가족변화의 단면을 볼 수 있음.

- ▶ 가족 관련 인식조사 결과(김영란 외, 2021:52-53) 여전히 가족은 혼인과 혈연관계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그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관계에 한정됨. 그리고 도구적 기능보다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는 경향도 나타남(김영란 외, 2021:56). 이처럼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가족의 개념은 축소·약화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중심으로 가족을 인식하는 흐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가족(특히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와 책임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 부양이 가족(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기존에 가족이 책임지던 부양을 정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지는 추세임(아래 <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향후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족(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 온 기존의 부양 체계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림 1>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2002-2020)



주1: 2002~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08년 이후는 13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결과임.

주2: 2002년과 2006년의 경우 '기타'에 대한 응답이 각각 0.2%, 0.1%로 나타났으나 본 그래프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A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A03&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C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C03&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3)(검색일 : 2022.6.2.).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족은 친밀성에 기반해 개인이 선택하고 구성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가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는 현실임. 이러한 가족 변화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고정화된 관계, 경제적 공동체로 기능하는 집합적 가족의 상을 전제하는 기존의 사적 부양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민법상 부양제도 현황 및 한계

● 우리 민법은 민법 제7장에서 친족 간 부양에 관하여 6개의 조문(민법 제974조부터 제979조까지)을 두고 있음.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호주(戶主)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삭제한 개정(1990년)을 제외하고는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정 당시의 대가족 제도에 토대를 둔 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 민법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친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임(민법 제777조))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민법 제975조). 민법 제7장 부양 파트에서는 이와 같이 혈족에서 인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의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
- ▶ 한편, 이러한 일반 친족 부양보다 더 무거운 부양으로 이해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를 ‘보호 양육할’ 친권의 내용(민법 제913조)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도출될 뿐임.
- ▶ 배우자 간 부양의무 역시 성격상 친족 간 부양의무보다 무거운 의무로 이해되고 있고, 이 부분은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에서 찾기보다는 민법의 혼인법 파트의 별도의 배우자 간 의무 규정(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임.

<표 2> 우리 민법상 부양 체계

구분	부양의무자의 범위	근거 규정
배우자 간 상호 부양	법률혼 배우자 간 상호 부양	민법 제826조(부부 간의 의무): 동거·부양·협조 의무
	사실혼 배우자 간 상호 부양	-근거 규정 없음 -판례로 인정: 동거·부양·협조 의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부양의무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님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규정에서 도출
친족 간 부양	직계혈족 간 부양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부터 제979조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양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부터 제979조
	기타 친족 간 부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는 범위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중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설명한 친족을 제외한 나머지 친족 (지배적 견해와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기에서 제외)	민법 제974조 제3호, 제975조부터 제979조

자료: 민법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우리의 부양제도는 전근대성(대가족·친족 공동체)에 기초한 법 규정과 근대성(핵가족)을 반영하기 위한 해석론과 판례의 법리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된 사회에서 친족 부양보다는 배우자 간 부양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중심이 되어 왔음. 그러나 정작 민법상 부양을 규정한 제7장은 전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기능하기 적절하지 않았고, 종래의 법리에 의하면 정작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부양에는 민법 제7장은 적용의 여지가 없어 효용이 떨어지게 되었음. 배우자 간 부양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법리는 부양 관련 규정이 아닌 판례가 메워왔음. 그나마 개인이 선택하고 구성하는 관계에서의 부양에 대한 대응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게다가 민법 제7장 제974조의 친족 간 부양은 지나치게 그 범위가 넓고, 변화하는 가치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 이와 같이 민법상 사적 부양 체계는 전근대적인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친족 단위의 부양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석론 중심의 법리로 핵가족화된 사회에 맞추어오다 보니, 법제도와 해석론 간의 부정합이 존재하는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가족변화에 대응한 부양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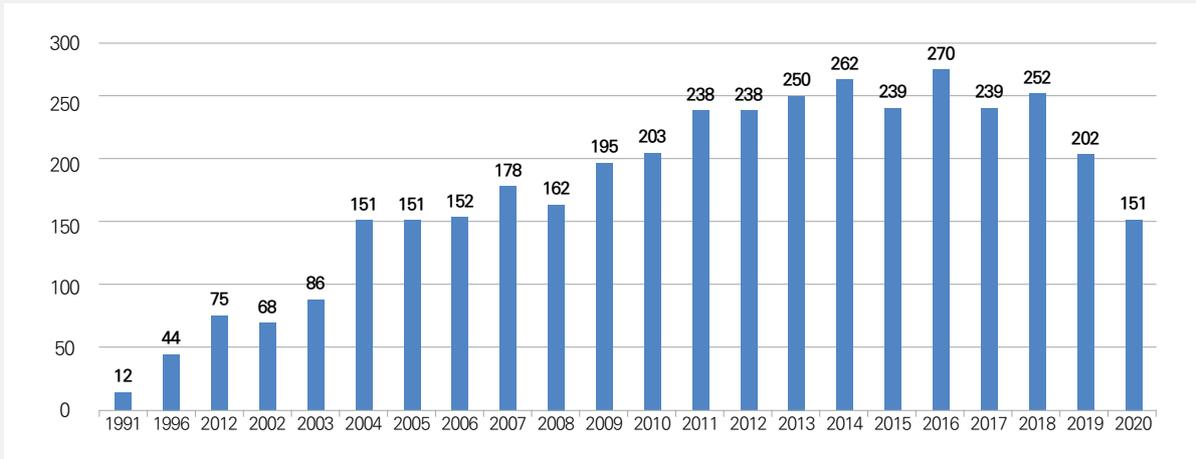
● **민법상 부양제도가 가족 다양성의 증대와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실과도 괴리가 커지게 되었음은 판례와 부양 관련 자료·문헌 등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부양과 관련한 가족 간의 다름은 가족 부양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규범, 가족의 변화와 부양 의식 변화 간의 부정합과 갈등이 다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가족 간 부양에 관한 다름 관련 부양료 청구 소송 현황은 우리 사회 가족 간 부양에 대한 갈등과 변화를 보여줌.**

- ▶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의하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1991년 12건, 2001년 7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151건, 2016년 27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151건으로 나타났음(아래 <그림 2> 참조).
- ▶ 가족 간에 당연시되었던 부양의무는 가족의 유동성과 다양성의 증대로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현실과 제도 간 괴리, 가족 간 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차이로 갈등이 소송으로 나타나 증가해오다가, 더 이상 혈연으로 구속되는 가족 간 부양 부담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떠맡기 어려워진 가족 변화 현실에 따라 소송으로 가져가면서까지 법정의 친족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다투고자 하는 경향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그림 2> 부양료 심판 청구 접수 건수

(단위: 건)



자료: 법원행정처(1991, 1996, 2001~2020년 각 연도), 사법연감.

## ● 판례와 사례 검토를 통해 본 가족 부양 이슈와 함의

### ● 당연히 여겼던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대부모 부양을 자식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는 인식은 약화됨을 확인할 수 있음. 제도는 부양을 혈족 관계로 구속하고 있으나, 관계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혈족이라는 생래적 관계에 기하여 당연한 부양 책임을 기대하고 의지하기는 어려워졌음.

자녀가 두 명 있는데 모두 연락이 단절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자녀들이 여유가 있어 안된다고 한다.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싶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로 내담자는 70세 여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9.8)

- ▶ 직계혈족을 넘어 민법이 규정하는 친족 단위의 부양은 이제 거의 실효적이지 않으며, 사문화된 것으로 보임. 기타 친족 간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 간 부양청구 외에는 형제자매 등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 부양 관련 사례나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그나마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 부양의무가 없는 사례들임. 제도가 규정하는 광범위한 친족 단위의 부양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직계혈족 간에도 부양 인식이 약화된 현실에서 상호 간에 법적으로 부양을 요구할 것이라거나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는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남편이 2년 전 사망하였고 시누이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시어머니가 2시간 거리에 사시는데 시누이가 어머니의 생활비를 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더 이상 시어머니(조모)의 부양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로 내담자는 63세 여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9.10).

따로 살던 아들 A로부터 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살던 시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한 후 아들의 생존 배우자(며느리)로부터 역시 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다 재산 다툼이 있자, 과거의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를 며느리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래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하여 역시 시어머니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부양금]; 이은정, 2017:209-210.)

● **부양 책임에서 상호관계성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 가족과 관계의 유동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양은 생애적인 친족관계에서 당연히 일괄적으로 부담 시키거나 또는 부정하는 접근이 적절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상호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부양을 판단해야 하는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있음.
-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불이행, 가정폭력 등으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의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인 자녀들의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음.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부양 책임은 당연한 것으로, 부양의 근거를 도덕과 혈연관계에서 찾던 것에서, 직계혈족이라도 관계의 상호적 측면에서 부양 책임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
- ▶ 또한 재혼 가족 등 일괄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관계의 속성과 맥락에 따라 기존의 부양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음.
- ▶ 이와 같이 부양에 대한 판단이 상호적 관계에서 고려될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어,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혈연이나 법정 친족 관계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양의무를 재단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음.

아버지가 도박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양청구를 했다.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주고 싶지 않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로 내담자는 49세 남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9.8).

부(父)(청구인)가 딸(상대방)에게 월 60만 원의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부(父)(청구인)는 딸(상대방)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처(딸의 모(母))와 딸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하고(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중학교 진학도 시키지 않았다. 딸(상대방)은 집을 나와 먼저 집을 나온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부(父)(청구인)는 딸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학비 등을 대주지도 않았다. 딸(상대방)은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그 후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딸(상대방)은 현재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 둘(7세, 5세)을 양육하며, 함께 동거중인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요양시설에 있는 시부모의 요양비용(월 약 11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딸(상대방)의 평균 월수입은 약 4백여만 원이고 배우자는 교육공무원으로 맞벌이를 하며, 대출금 8천만 원이 있어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2. 9. 27.자 2012느단299 심판: 확정 [부양료]. 판시 사실관계를 토대로 연구진이 요약 정리함)

● **가족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 아동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외의 다양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현행 부양제도가 매우 미흡하고 취약하다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음.**

- ▶ 아직까지 판례나 사례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친권과 양육의 분리, 부양회피 등의 이슈가 주로 많지만, 이에 더하여 아동학대 등으로 친권 정지, 상실, 또는 친권자의 수감 등의 사정, 친권자 내지 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이나 위탁가정, 시설보호 등 친권과 양육이 분리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 이러한 유동적 가족관계와 미성년 아동에 대한 부양 이슈에 대하여 현재 민법의 부양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

● **비혼과 1인가구의 증가, 비친족가구의 증가 등 가족 다양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상 가족 친족으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으나, 반면 기꺼이 부양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음.**

- ▶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구성하고 상호 부양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사례에서는 이러한 부양의 의사와 현실의 부양 관계가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한편으로는 최근 판례에서의 동향도 살펴볼 수 있음). 기존의 가족·친족 부양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나 공적 부양이 완전히 이를 보완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구성된 상호 부양 관계에 대한 존중과 제도적 지지는 이러한 부양제도 틈새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슈로 고민되어야 함.

‘법적 가족’이 아니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설문조사 14. 정부 복지 정책서비스 이용에서 차별경험 문항 답변(이민주, 2022:20에서 재인용).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1월 7일 동성인 남성 배우자 B(32)씨를 둔 A(31)씨가 “사실혼 배우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115,56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21구합55456)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 2018. 12. 1.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리컬타임즈, 2022.2.12.)

그러나 이 사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여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상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외국사례**

● **해외 각국의 법제에서 규정하는 사적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외국 법제별 사적 부양의무자의 범위

법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	참고
우리 민법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당사자
중유럽·북유럽 국가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 조부모 ⇔ 손자녀 부양의무 인정(독일) • 부모 ⇔ 성년 자녀 부양의무일부 인정(독일) • 부모 ⇔ 성년 자녀 부양의무 불인정(영국)
남유럽·동유럽 국가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③ 형제자매	• 그리스·스페인·터키·러시아 연방 • 이탈리아(직계혈족의 배우자 포함)
아시아 국가	일본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형제자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촌 이내의 친족*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함
	대만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③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④ 형제자매	• 그 밖에 호주(家長) 가족 상호 간 부양도 포함됨

자료: Dethloff(2018:Rn.4); Muscheler(2017:Rn.661); Schwab(2022:Rn.1055, Rn.1110); Lowe et.(2021:227); 그리스 민법 제1504조(출처: 그리스 법무부 사이트 <https://www.ministryofjustice.gr/wp-content/uploads/2019/10/%CE%91%CF%83%CF%84%CE%B9%CE%BA%CF%8C%CF%82-%CE%9A%CF%8E%CE%B4%CE%B9%CE%BA%CE%B1%CF%82.pdf>, 검색일 2022.8.30.); 스페인 민법 제143조(출처: 스페인 법무부 사이트 [https://www.mjusticia.gob.es/es/AreaTematica/DocumentacionPublicaciones/Documents/Spanish\\_Civil\\_Code\\_\(Codigo\\_Civil\\_Espanol\).PDF](https://www.mjusticia.gob.es/es/AreaTematica/DocumentacionPublicaciones/Documents/Spanish_Civil_Code_(Codigo_Civil_Espanol).PDF), 검색일 2022.8.30.); 터키 민법 제364조(출처: 터키 법령정보 사이트 <https://www.mevzuat.gov.tr/mevzuatmetin/1.5.4721.pdf>, 검색일 2022.8.30.); 러시아연방 가족법 제93조(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rlCls=3&searchNtrl=RU&pageIndex=2&CTS\\_SEQ=4969&AST\\_SEQ=261](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rlCls=3&searchNtrl=RU&pageIndex=2&CTS_SEQ=4969&AST_SEQ=261), 검색일 2022.8.30.); 이탈리아 민법 제433조(출처: 이탈리아 관보 사이트 <https://www.gazzettaufficiale.it/dettaglio/codici/codiceCivile>, 검색일 2022.8.30.); 일본 민법 제752조·제877조(출처: 일본 법무성 사이트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129AC0000000089>, 검색일 2022.8.30.); 대만 민법 제1114조·제1116조의1(출처: 법무부, 2012:599)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

● 기본적으로 각 법제 내에서 사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의무자 범위 자체가 우리 법제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매우 좁음.

- ▶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중유럽·북유럽의 경우 직계혈족에 부양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만을 인정하거나,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조부모·손자녀 간 까지를 인정하고 있음. 사적 부양 체계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심이 되는 관계는 배우자·파트너 관계와 미성년 자녀임을 살펴볼 수 있음.

## 정책제언

### ● 부양제도 정비 방향

● 가족변화에 조응할 수 있도록 사적 부양 체계의 재구조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사적 부양 체계는 혈연·신분 기반의 생래적이고 구속적인 부양의무를 완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에 의한 상호 부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함.
- ▶ 사적 부양의 인적 대상과 범위의 주요 정비 과제의 요지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으로 존재의 의의가 있는 부양의 근거는 명확히 하되, 농경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는 친족·혈족 단위의 광범위한 친족 부양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이에 민법상 부양제도 정비 방향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 민법상 부양의 주된 근거와 법리는 자신의 의사에 기한 관계와 계약에 기한 책임 및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에서 찾아야 함. 여기에서 배우자(혼인당사자, 생활공동체관계 등 당사자) 간 상호 부양의무, 미성년(아동·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도출됨.
- ▶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공적 부양제도가 사적 부양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는 그 토대를 그 사회의 인식에 기초하여 인정하되, 변화된 가족과 가치에 맞게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하며, 상호적 관계성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따라 광범위한 친족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계혈족까지로 재구조화되되, 상호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판단의 여지를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이러한 사적 부양제도의 재구조화의 방향성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고 개인의 경제적 토대와 안전망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큰 흐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적 부양의 강화와 함께 하는 것으로서 공적 부양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 부양제도 정비 과제

### ● 상호 부양을 선택한 당사자들을 위한 부양 규정 정비

- ▶ 민법상 부양은 그 주된 근거와 법리를 자신의 의사에 기한 관계와 계약에 기한 책임에서 찾아야 할 것임. 선택한 상호 부양 관계에 기한 부양의무의 대표적인 것은 현행 민법에서는 배우자-혼인당사자 간 부양일 것임. 그러나 가족 다양성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사적 부양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적 부양이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선택한 상호 부양 관계를 법률혼에만 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의 부양 상황을 제도에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공적 부양 비용 부담과 부양 체계의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임.
- ▶ 사적 부양 체계는 당사자들이 상호 부양을 하기로 선택한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의 법률혼관계 뿐 아니라 대안적 관계 구성과 선택을 존중하여 부양 체계에 포괄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근거 및 우선 순위의 명확화

-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적 부양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 여타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부양과는 다른 무거운 부양 책임과 우선 순위를 인정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법리는 결국 행위에 따른 책임에서 찾아야 할 것임.
- ▶ 사적 부양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구상 등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과의 관계, 구상 관계 그리고 가족변화와 함께 이혼 이외에도,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부양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행사자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민법의 부양 파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근거 및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제안함.
- ▶ 친권자 내지 부모가 아닌 양육자, 예컨대 미성년후견인, 위탁가정, 시설보호 등 친권과 양육이 분리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구상 이슈 및 법적 근거, 나아가 결국 구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함.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방법, 친권과 양육이 분리된 경우의 부양 책임에 대한 원칙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친족 부양 범위 축소와 재구조화

- ▶ 지나치게 광범위한 현행 친족 간 부양의무 범위를 가족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를 넘어 개인화로 변화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도 변화하고 있어, 더 이상 친족 단위의 부양 체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다만 공적 부양제도가 사적 부양제도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시대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부양의 범위를 재구조화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 ▶ 외국의 경우 파트너와 미성년 자녀를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사적 부양이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사적 부양의 범위가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한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로 가장 넓은 국가로 파악됨. 이에 현행의 친족 간 부양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부모자녀 간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함.
- ▶ 아울러 가족 관계와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부양청구권 제한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 공적 부양제도 강화·사적 부양제도 재구조화와의 조응

- ▶ 공적 부양제도의 강화와 사적 부양제도 재구조화는 함께 조응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임. 사적 부양 제도 재구조화와의 관계에서 공적 부양을 고찰하면, 사적 부양제도의 재구조화는 우리 사회에서 큰 흐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적 부양의 강화와 방향을 같이 함. 공적 부양의 강화를 토대로 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개인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부양 관계 형성이 가능함. 또한 선택에 의한 부양 관계의 구성을 존중하는 것은 공적 부양의 강화에 수반되는 공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해될 수 있기도 함.
-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근거의 명확화 및 다양한 가족 배경 내에서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전제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미성년 자녀를 위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모두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함.
- ▶ 친족 간 사적 부양 범위의 축소는 공적 부양제도의 강화와 함께 가야 하는 과제임. 가족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실효성 없는 사적 부양의 범위를 재구조화 하고, 공적 부양체계에서 개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함.
- ▶ 개인의 안전망이 공적 부양의 강화를 통해 보장되고, 공적 체계로 세세히 닿을 수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개인들 간의 부양과 연대가 스며들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양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토대와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사적 부양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조화로우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국내문헌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법무부(김성수 역)(2012). 대만민법전. 민속원.

법원행정처(1991, 1996, 2001~2020년 각 연도), 사법연감.

송호진·김소영·선보영·홍윤선(2022).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민주(202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 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발제문,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발행.

이은정(2017). 민법상 부양제도에 관한 고찰-부양 당사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5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7-231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2.9). “상담사례에 나타난 친족 및 배우자부양의 현황과 시사점”. 월간 가정상담 9월호(통권469호). 6-14면. <http://lawhome.or.kr/new21/law04/sub01/list.asp> (검색일 2022.10.15.).

### 외국문헌

Dethloff, Nina(2018). Familienrecht. C.H.Beck.

Lowe, Nigel·Douglas, Gillian·Hitchings, Emma·Taylor, Rachel(2021). Bromley's Family Law (12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Muscheler, Karlheinz(2017), Familienrecht. Vahlen.

Schwab, Dieter(2019). Familienrecht. C.H.Beck.

## 기사-보도자료

리걸타임즈, "[행정]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불가"(2022.2.12.자 기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55> (검색일 2022.9.19.)

통계청(2022.6.28).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 보도자료

## URL

그리스 법무부사이트 <https://www.ministryofjustice.gr/wp-content/uploads/2019/10/%CE%91%CF%83%CF%84%CE%B9%CE%BA%CF%8C%CF%82-%CE%9A%CF%8E%CE%B4%CE%B9%CE%BA%CE%B1%CF%82.pdf>, 검색일 2022.8..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RU&pageIndex=2&CTS\\_SEQ=4969&AST\\_SEQ=261](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RU&pageIndex=2&CTS_SEQ=4969&AST_SEQ=261), 검색일 2022.8.30.

스페인 법무부 사이트 [https://www.mjusticia.gob.es/es/AreaTematica/DocumentacionPublicaciones/Documents/Spanish\\_Civil\\_Code\\_\(Codigo\\_Civil\\_Espanol\).PDF](https://www.mjusticia.gob.es/es/AreaTematica/DocumentacionPublicaciones/Documents/Spanish_Civil_Code_(Codigo_Civil_Espanol).PDF), 검색일 2022.8.30.

이탈리아 관보 사이트 <https://www.gazzettaufficiale.it/dettaglio/codici/codiceCivile>, 검색일 2022.8.30.

일본 법무성 사이트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129AC0000000089>, 검색일 2022.8.30.

터키 법령정보 사이트 <https://www.mevzuat.gov.tr/mevzuatmetin/1.5.4721.pdf>, 검색일 2022.8.30.

통계청(1980-2020, 각년도).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을 추이.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I3)(검색일: 2022.6.3.).

통계청(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사회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3)(검색일 : 2022.6.3.)

통계청(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이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C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C09&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I3)(검색일: 2022.6.3.)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A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A03&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C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2C03&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3)(검색일 : 2022.6.2.).

## 판례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부양금] 출처: 종합법률정보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 사이트에서 검색. 검색일 2022.8.30.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상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 사이트에서 검색. 검색일 2023.6.28.

청주지방법원 2012. 9. 27.자 2012ㄴ단299 심판: 확정 [부양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intsrch/sjo022.do>) 사이트에서 검색. 검색일 2022.8.30.

주관부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부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